

 기획재정부		보 도 자 료	
보도일시	배 포 시	배포일시	2021. 1. 5.(화) 14:00
담당과장	세제실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(044-215-4110)	담당자	김만수 서기관 (044-215-4111)

조세특례제한법,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

- 기획재정부는 ‘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’(20.11.19), ‘2021년 경제정책방향’(20.12.17), ‘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’(20.12.29) 및 ‘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’(20.12.23)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소득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.
-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(‘21.1.7.~1.14.), 차관회의,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,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□ 법 개정안 주요내용

< 조세특례제한법 >

- ① ‘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
(‘21년 경제정책방향)
- ‘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% 이상 증가하는 경우 5%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% 소득공제 적용(한도 100만원)
- * 현행 공제한도(급여수준별 200~300만원: ‘20년은 230~330만원)에 100만원 추가

- ②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(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)
 -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%에서 70%로 상향
(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% 세액공제율 적용)
 - ③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* 한시 개편
(‘21년 경제정책방향)
 - *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~1,200만원(대기업: 2년간, 중소기업: 3년간) 소득세·법인세 세액공제
 - ‘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‘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
- ▶ (현행) ‘20년 고용 감소시 ‘19년 고용증가 혜택 중 ‘20년 감소분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
 - ▶ (개정) ‘20년 고용 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
- ④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
(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)
 -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‘22.12.31.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% 감면

<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(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) >

- ①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과약의 적시성 제고
- ①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
-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: 매 분기 → 매월
-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: 매 반기 → 매월

㉠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

-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·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*

* 【미제출 가산세】 1% → 0.25%
 【지연제출 가산세】 0.5% → 0.125% (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)

- 소규모 사업자*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**현행 제출 기한****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('21.7월~'22.6월) **가산세 면제**

*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
 ** 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분기별) :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
 ②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(반기별) :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

- 지급명세서상 **불분명 금액***이 **일정 비율 이하**(시행령에서 규정)인 경우 **가산세 면제**

* 소득자의 인적사항,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㉡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: 매년 → 매 분기

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044-215-내선번호)

■ [조세특례제한법]

① 소득세제과 4211 ② 소득세제과 4212
 ③ 조세특례제도과 4131 ④ 재산세제과 4314

■ [소득세법, 법인세법]

①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4371

참고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

(1)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(§ 126의2)

현행	개정안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○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 ○ (공제율) 결제수단·대상별 차등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신용카드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②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</td> <td>30%</td> </tr> <tr> <td>③ 도서·공연·미술관 등*</td> <td>30%</td> </tr> <tr> <td>④ 전통시장·대중교통</td> <td>4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지만 적용	구분	공제율	① 신용카드	15%	②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	30%	③ 도서·공연·미술관 등*	30%	④ 전통시장·대중교통	40%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○ (좌 동)
구분	공제율										
① 신용카드	15%										
②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	30%										
③ 도서·공연·미술관 등*	30%										
④ 전통시장·대중교통	40%										
<신설> ○ (공제한도) 급여수준별 차등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총급여 기준</th> <th>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천만 원 이하</td> <td>300만 원</td> </tr> <tr> <td>7천만 원~1.2억 원</td> <td>250만 원</td> </tr> <tr> <td>1.2억 원 초과</td> <td>200만 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- (추가한도) 항목별* 100만 원 * 도서·공연·미술관 등 사용분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사용분	총급여 기준	한도	7천만 원 이하	300만 원	7천만 원~1.2억 원	250만 원	1.2억 원 초과	200만 원	- '21년 소비금액* 중 '20년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: 10% * ① ~ ④ 금액의 합계액 ○ (좌 동)		
총급여 기준	한도										
7천만 원 이하	300만 원										
7천만 원~1.2억 원	250만 원										
1.2억 원 초과	200만 원										
○ (적용기한) '22.12.31.	-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○ (좌 동)										

<개정이유> 소비 활성화 지원
 <적용시기> '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[2]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(§ 96의3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세액공제액 ○ 임대료 인하액의 50%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율 인상 ○ 50% → 70% - 다만,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* 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% 세액공제율 유지 *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

<개정이유>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

[3]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(§ 29의7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○ (공제금액)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연간 400~1,200만원 세액공제 (단위: 만 원)	<input type="checkbox"/> '20년 고용감소의 경우 사후관리 예외를 인정하여 지속 지원 ○ (좌 동)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중소기업</th> <th rowspan="2">중견기업</th> <th rowspan="2">대기업</th> </tr> <tr> <th>수도권</th> <th>지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 국기유공자 등</td> <td>1,100</td> <td>1,200</td> <td>800</td> <td>400</td> </tr> <tr> <td>기타 상시근로자</td> <td>700</td> <td>770</td> <td>450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중소기업		중견기업	대기업	수도권	지방	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 국기유공자 등	1,100	1,200	800	400	기타 상시근로자	700	770	450	-	
구 분		중소기업			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
	수도권	지방																
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 국기유공자 등	1,100	1,200	800	400														
기타 상시근로자	700	770	450	-														
○ (공제기간) 대기업 2년 중소·중견 3년 ○ (사후관리)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, - ①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 공제액 납부 + ②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 < 신 설 >	○ (좌 동) ○ (좌 동)																	
	○ '20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* * ①감소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의무 면제 + ②잔여기간 동안 세액 공제 지속 적용																	

<개정이유>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[4]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[§ 97의9]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원요건)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자*(이하 '건설사업자')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공주택사업자(LH 등)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○ (지원내용)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% 감면 ○ (사후관리)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·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

<개정이유>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참고 2

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

(1)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[소득세법 § 164, § 164의3]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명세서* 등 제출주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득지급자(원천징수의무자)가 소득지급 사실(소득자 인적사항, 소득금액 등)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○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: 매 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(원칙)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·(예외) 휴업, 폐업,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○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*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: 매 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(예: 보험모집인, 학습지 방문강사, 방문판매원 등) ·(원칙)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·(예외) 휴업, 폐업,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	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: 매 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(원칙)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·(예외) 휴업, 폐업,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○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: 매 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(원칙)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·(예외) 휴업, 폐업,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

<개정이유> 「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('21.6.30.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)

[2]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(소득세법 § 81의11, 법인세법 § 75의7)

현 행		개 정 안	
<input type="checkbox"/>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		<input type="checkbox"/>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	
구 분	가산세율	구 분	가산세율
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	1%	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	0.25%
②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지연제출	0.5%	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* 지연제출	0.125%
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	1%	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	0.25%
※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0.25%(지연제출시 0.125%) 가산세율 적용		*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→ 1개월로 개정	
< 신 설 >		<input type="checkbox"/>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	
		*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(대상 : '21.7~'22.6월 지급한 소득)	
		*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* 등이 일정비율** 이하시 가산세 면제	
		* 소득자의 인적사항,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	
		**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	

<개정이유>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(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)

[3]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(소득세법 § 173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자료 제출 협조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자료 제출협조 주기 단축
<input type="checkbox"/> (제출자)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하는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
* 대리운전용역, 소포배달용역, 골프장 경기보조용역 등	
<input type="checkbox"/> (제출내용)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*	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
* 인적사항, 용역제공 기간 및 용역 제공 대가 등	
<input type="checkbox"/> (제출주기) 매년	<input type="checkbox"/> (제출주기) 매 분기
-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	-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

<개정이유> 「**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**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**소득정보 인프라 구축**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('21.6.30.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)